「창업보육센터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0. 9. 7. 개정 판 (시행 2020. 7. 1.) → 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7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207/compare?from=991&to=1285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10:01:2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(위원장), 창업보육센터장(서기)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재무실장, 창업보육센터팀장, 산학협력팀장, 창업보육매니저, 입주기업 대표자(초청위원)로 구성된다. 〈개정 2016-02-29〉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창업보육센터 입주·퇴실 관련사항 2.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항. 〈개정 2016-02-29〉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**제38조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(위원장), 창업보육센터장(서기), 각 처장, 재무처장, 창업보육센터팀장, 산학협력팀장, 창업보육메니저, 입주기업 대표자(초청)로 구성된다. 〈개정 2016-02-29〉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창업보육센터 입주·퇴실 관련사항 2.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항. 〈개정 2016-02-29〉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창업보육센터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>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(위원장), 창업보육센터장(서기), 각 처장, 재무처장, 창업보육센터팀장, 산학협력팀장, 창업보육메니저, 입주기업 대표자(초청)로 구성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